

기초연금 지급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</td> <td style="width: 25%; 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width: 25%; 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width: 25%; 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137,124,527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9,840,116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3.2 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366,964,643천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총	1,137,124,527천원	229,840,116천원	83.2 %			1,366,964,643천원			
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					
총	1,137,124,527천원	229,840,116천원	83.2 %													
	1,366,964,643천원															
사업내용	○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					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서울시					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	
운영비보조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박기용 2133-7400	육언조 2133-7418	채소영 2133-7413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,036,427,324) 1,254,519,716	(x1,097,268,321) 1,324,083,164	(x1,137,124,527) 1,366,964,643	(x39,856,206) 42,881,479	(x3) 3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1,036,427,324) 1,254,519,716	(x1,097,268,321) 1,324,083,164	(x1,137,124,527) 1,366,964,643	(x39,856,206) 42,881,479	(x3) 3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기초연금 지급(713천명) 1,366,964,643,000원 = 1,366,964,643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·재산 수준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
 - 선정기준액('16년) : 단독가구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
- 지원금액 : 20,000원 ~ 최고 204,010원 차등지급(국민연금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)
- 연금수급자수 : 713천명(서울통계 어르신인구 추계 65세 이상 인구증가율(4%)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될 것으로 전제하여 2016 평균수급자 수에서 4% 증가분 반영)

□ 추진경위

-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정 및 시행(제정 2007.4.25, 시행 2008.1.1)
- 「기초연금법」 제정 및 시행(제정 2014.5.20, 시행 2014.7.1)
- 수급대상자 확대
 - 2008. 1월 ~ 6월 : 70세 이상 노인의 60%
 - 2008. 7월 ~ 12월 : 65세 이상 노인의 60%
 - 2009. 1월 ~ 현재 : 65세 이상 노인의 70%
- 소득인정액 인상
 - 노인 단독가구 :
40만원(08년)→68만원(09년)→70만원(10년)→74만원(11년)→78만원(12년)→83만원(13년)→87만원(14년)→93만원(15년)→100만원(16년)
 - 노인 부부가구 :
64만원(08년)→108.8만원(09년)→112만원(10년)→118.4만원(11년)→124.8만원(12년)→132.8만원(13년)→139.2만원(14년)→148.8만원(15년)→160만원(16년)

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『기초연금법』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가내시 및 `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분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

사업추진절차

-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수요조사로 월별 보조금 교부하여 개인별 지급

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366,964,643	
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월별 보조금 교부	2017.01~2017.12	1,366,964,643	월별 보조금 교부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인원 : 639천명 ○ 예산집행 : 860,421백만원
--------	---

2015년도	○ 지급인원 : 660천명 ○ 예산집행 : 1,254,517백만원
2016년도	○ 지급인원 : 687천명 ○ 예산집행 : 1,324,083백만원(예정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기초연금 지급을 통하여 현 세대 노인 빈곤의 균형적 완화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세대 안정적인 공적연금 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413,825,852) 509,523,156	(x-)0	(x-)0	(x421,040,803) 518,523,156	(x420,002,155) 517,178,504	(x-)0	(x1,038,648) 1,344,652
2014	(x682,983,332) 838,492,934	(x-)0	(x-) -74,400	(x715,783,332) 879,118,534	(x698,974,877) 860,421,228	(x-)0	(x16,808,455) 18,697,306
2015	(x1,036,427,324) 1,254,519,716	(x-)0	(x-)0	(x1,036,427,324) 1,254,519,716	(x1,032,226,105) 1,247,424,811	(x-)0	(x4,201,219) 7,094,905